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4.

임미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 9.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9.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임미애의원)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황 승 기)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 현행법은 제8조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고시하고 있음.
- 그런데, 2021년 동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이 도입되었는데, 이후 일부 업체가 현행법을 근거로 정산주기를 연장한 사례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에서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직매입거래 정산기한의 단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유리한 거래방식인 직매입거래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선농·수·축산물에 대하여 현행법은 그 상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에 감안하여 감액, 반품에 있어 특칙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금의 정산기한까지 일반 제품, 일반 농·수·축산품과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중소 납품업자 보호 강화 필요성, 업계의 거래 관행, 매입 형태 별 대금지급 기한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또한, 특약매입, 직매입 등 전통적 소매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외상매입한 경우로서, 거래의 편의를 위해 외상매입한 금액을 예치 등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현실과 맞지 않

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서일준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